

[붙임 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서

# 마포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분 야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지식서비스	
성 명		연 락 처	핸드폰	전화
생 년 월 일	0000.00.00		이메일	
공동창업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창업유무	<input type="checkbox"/> 창업(창업일 :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미창업(예정일 :    년    월    일)	
주 소				
창업아이템명				
입주 희망기간	0000.00.00 ~ 0000.00.00			
現 사업화 단계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단계 <input type="checkbox"/> 상품화단계 <input type="checkbox"/> 사업화단계			
4차 산업혁명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인공지능 <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 <input type="checkbox"/> 5G+ <input type="checkbox"/> 블록체인 <input type="checkbox"/> 서비스플랫폼 <input type="checkbox"/> 실감형콘텐츠 <input type="checkbox"/> 지능형 로봇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제조 <input type="checkbox"/> 시스템반도체 <input type="checkbox"/> 자율주행차 <input type="checkbox"/> 전기수소차 <input type="checkbox"/> 바이오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기 <input type="checkbox"/> 기능성식품 <input type="checkbox"/> 드론 <input type="checkbox"/> 미래형 선박 <input type="checkbox"/> 재난/안전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시티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홈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이차전지 <input type="checkbox"/> CCUS(탄소포집)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및 에너지 활용			
기 업 현 황	기 업 명			주 요 생 산 품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 년 도 수 출 액	백만원
	고 용 인 원	명	투 자 유 치 액	백만원
지원센터 입주이력	센 터 명			
	입주기간	0000.00.00 ~ 0000.00.00 (총    개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록 (    )개		출원 (    )개		인증 (    )개
공동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분야
		0000.00.00		
		0000.00.00		

\*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은 타 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나, 전체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간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 \_\_\_\_\_ (인)

-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이력서 1부(자유양식).  
 3.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각종 증명서류 각 1부. 끝.

**마포비즈플라자센터장 귀하**

## 1. 창업 동기 및 추진사항

<b>창업 동기</b>	◆ 창업동기 및 창업목표를 기술
<b>입주 중 추진사항</b>	◆ 입주 중 사업추진 내용

## 2. 사업화 및 추진계획

<p>제품의 개요</p>	<p>◆ 기술개발의 필요성, 창업과제의 용도, 사양, 주기능,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p>
<p>국내외 시장규모·전망</p>	<p>◆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진입 조건 등 시장구조 및 특성, 주요 수요처 등</p>
<p>파급효과</p>	<p>◆ 사업화 성공에 따른 고용인원 창출 등 고용창출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제 우대          ◆ 사회적 가치(일자리 안정자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력단절 채용 등)를 위한 노력과 계획</p>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업 및 규정준수 동의서**

본인은 중소기업부가 지원하고 마포구와 서강대학교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 신청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선정시점부터 창업지원 종료시까지 사업자 등록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인)

**마포비즈플라자센터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개인(기업/기관)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관련한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fax), 소속, 계좌번호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종료일 후에는 사업의 사후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존기간은 선정평가일로부터 이후 5년까지 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b>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b>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붙임 5] 입주기업 심사표

## 마포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심사표

<b>기업명</b>		<b>대표자명</b>	
<b>심사위원명</b>	(서명)	<b>평가일</b>	20 . . .

평가항목			평가등급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창업자 역량 (30)	1-1.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20	16	12	8	4	
		1-2.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	8	6	4	2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2-1.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10	8	6	4	2	
		2-2. 기술(제품)의 차별성	10	8	6	4	2	
3	기술성 (20)	3-1.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10	8	6	4	2	
		3-2. 기술구현의 현실성	10	8	6	4	2	
4	시장성 (20)	4-1.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10	8	6	4	2	
		4-2.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10	8	6	4	2	
5	기타 (10)	5-1.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5	4	3	2	1	
		5-2.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소 계(A)				
<b>가점사항</b>			<b>배점</b>	<b>해당여부</b>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1점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1인 창조기업			1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1점	
센터의 해당연도 중점특화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			1점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1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성실경영자)		3점	
소 계(B) Tip : 가점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대 3점까지 부여가능				
<b>합 계(A+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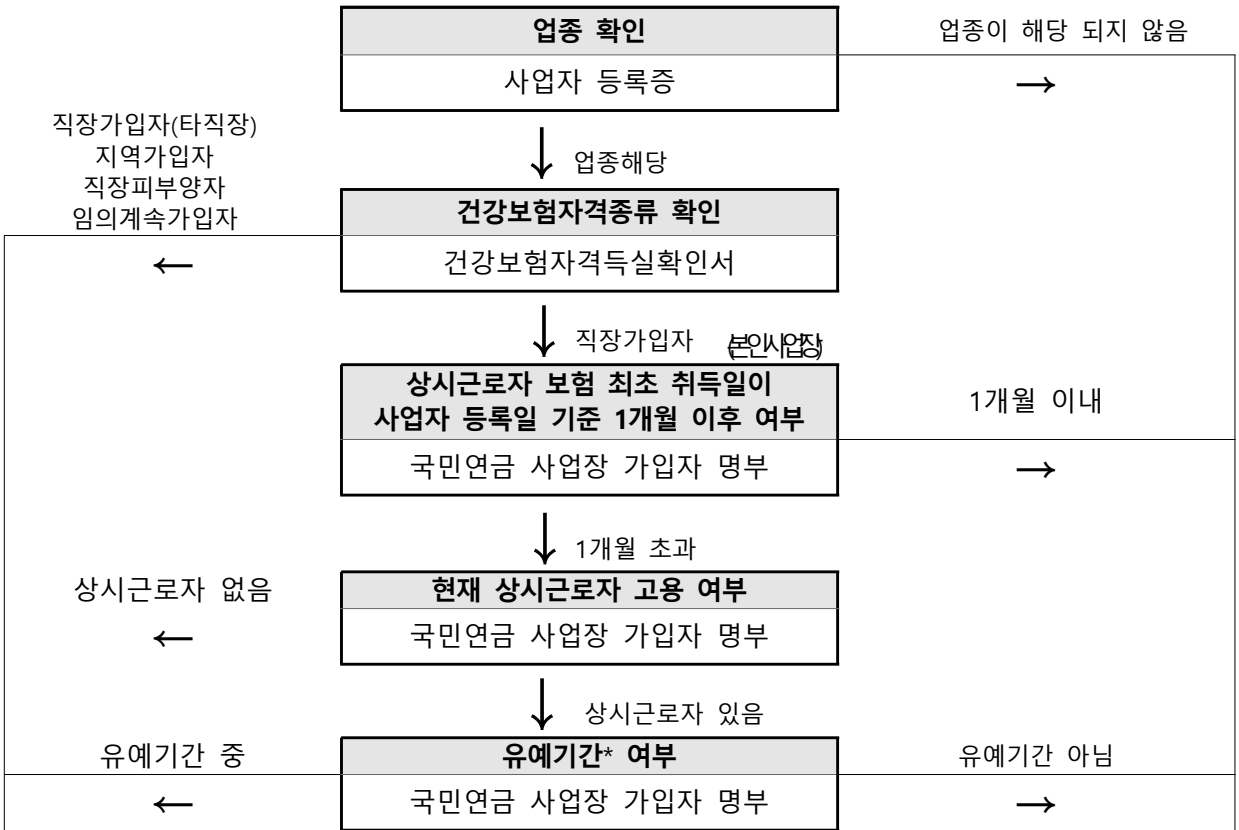
<b>평가의견</b>	<i>Tip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i>
-------------	---

[붙임 6] 1인 창조기업 확인 절차

## 1인 창조기업 확인 절차

-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 **상시근로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 **유예기간**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유예기간 판단 참고

1.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2.5.1일 창업, '12.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2.7.1~'15.12.31까지임
2. **유예기간 종료 후** :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2.5.1일 창업, '12.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2.7.1~'15.12.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 다만, '16.3.1~'16.3.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 '16.4.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 재유예기간은 '16.4.1~'19.12.31까지임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님**

[붙임 7]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